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법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63
----------	-------

제출연월일 : 2010. 10.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근거 법령인 「청소년기본법」의 개정(2004.02.09, 법률 제7162호)으로 관련 조항 및 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존치되고 있어 법과 조례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명을 근거 법령에 맞춰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함
- 나 관련 법조항을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서 “「청소년기본법」 제11조”로, 위원회 명칭을 현행 “서울특별시마포구 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조)
- 다.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위원 해촉사유에 성범죄 등 범죄 내용을 추가함(안 제4조)
- 라. 구청장 보고에서 회의록 작성·비치 의무로 변경하고, 회의록 작성과 관련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8조)
- 마. 법령 띄어쓰기 및 법률용어 순화 반영하여 조문상의 일부 표현 변경(안 제2, 3, 4, 5, 6, 9, 10, 11조)

3. 개정근거

- 1) 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
- 가정복지과 - 27543(2010. 8. 31)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1) 청소년기본법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나.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다.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0. 9. 2. ~ 9. 22.

- 2) 감사담당관 : 감사담당관-7060(2010.9.20)

○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검토결과 송부(제3조 구성, 제4조 위원의 임기)
- 위원회 위원의 연임 회수, 결격(해촉)사유 명시 할 것을 권고

-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4)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 청소년들의”를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구역 내 청소년들의”로, “서울특별시마포구 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같은 항 제4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중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청소년유해약물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행정기관간의”를 “행정기관 간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올린”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을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은 “명”으로, “위촉위원중에서”를 “위촉위원 중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

이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구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임기는 3년으로 하되”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위촉당시에”를 “위촉당시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질병 등 기타의”를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등 범죄와 연루된 경우와 질병 등의”로, “없을 때에”를 “없을 때에는”으로 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한다.”를 “업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년2회”를 “연 2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의사항”을 “회의에 올리는 사항”으로 하며, “7일전까지”를 “7일 전까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간사등)”을 “(간사)로 하고,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출석발언)”을 “(의견청취)”로 하고,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 “(수당등)”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소속”을 “구 소속”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며, 제2항 중 “제9조 규정에 의거”를 “제9조에 따라”로 하고, “구소속공

무원이 아닌자”를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로,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1조 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을 “운영에 관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p>	<p>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청소년기본법</u>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u>서울특별시마포구 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청소년기본법</u>」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구역 내 …… <u>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u> ……</p>
<p>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u>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u>의 자문에 응한다.</p> <p>1.~3. (생략)</p> <p>4. <u>청소년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및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u>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p> <p>5.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에 관한 <u>행정기관간의 협조·조정</u></p> <p>6. 기타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u>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u></p> <p>② (생략)</p>	<p>제2조(기능) ① <u>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u>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을 둔다</p> <p>1.~3.(현행과 같음)</p> <p>4. ……(「<u>청소년보호법</u>」 제2조에 따른 …… <u>청소년유해약물 등</u> ……</p> <p>5. …… <u>행정기관 간</u> ……</p> <p>6. <u>그 밖의</u> …… 회의에 올린 ……</p> <p>②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1인은 주민생활국장이 되며, 나머지 1인은 <u>위촉위원중에서</u> 호선한다.</p> <p>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u>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u>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p> <p>1. <u>구의회 의원</u></p> <p>2. ~ 3. (생략)</p>	<p>제3조(구성) ① 1명..... 2명..... 20명</p> <p>② <u>1명</u>..... ... 1명... <u>위촉위원 중에서</u></p> <p>③ <u>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u> 구청장이 위촉한다.</p> <p>1. <u>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구의회 의원"이라 한다)</u></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u>연임할 수 있다.</u> 다만, 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u>위촉당시에</u>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u>당해 직에</u>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②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u>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u>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u>전임자의 잔임기간</u>으로 한다.</p>	<p>제4조(위원의 임기) ① 2년..... <u>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u>위촉 당시에</u></p> <p>② <u>금품·향응수수, 성범죄 등 범죄와 연루된 경우와 질병 등의</u> <u>없을 때에는</u> <u>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u></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생략)</p>	<p>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등) ①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u>년2회</u>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u>부의사항</u>을 회의개최 <u>7일전까지</u>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p>	<p>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u>연 2회</u> ② <u>회의에</u> <u>올리는 사항</u>..... <u>7일 전까지</u> 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간사 1인과 서기 1인</u>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u>가정복지과장이</u> 되고, 서기는 <u>담당팀장</u>으로 한다.</p>	<p>제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u>간사 1명</u>을 두되, <u>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u> 된다. (삭제)</p>
<p>제8조(회의록) ①위원회의 간사는 <u>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u>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u>구청장</u>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u>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 내용</u>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p>	<p>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u>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u>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삭제)</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p>	<p>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10조(수당등) 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u>구조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u>에 대하여는 <u>예산의 범위안에서</u>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②제9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출석한 <u>구조속공무원이 아닌자</u>에 대하여는 <u>예산의 범위안에서</u>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0조(수당 등) ① <u>구 소속</u> <u>예산의 범위에서</u> ② <u>제9조에 따라</u> <u>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u>에 <u>예산의 범위에서</u></p>
<p>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u>운영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1조(운영규정) <u>운영에 관</u> <u>한</u></p>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
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년 10월 7일(목)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복지도시위원회 회부일자

2010년 10월 8일(금)

4. 개정근거

「청소년기본법」(법률 제10298호, 2010. 5.17) 제11조

5. 검토의견

0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이 개정(2004.2.9 법률 제7162호)됨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위원회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 변경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0 본 조례안 중 수정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제1항제6호 중“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하고, 안 제3조제3항제1호 중“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을 “삭제”하며, 안 제4조제1항 중 “위촉 당시에”를 삭제하고,

조례 제4조제1항 중 “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하고,”는 안 제3조제3항제1호의“구의회 의원”을 삭제할 경우 위 조문을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안 제7조 본문 “제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된다.”는 입법체계상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된다.”로 하고, 안 제9조 본문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

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u>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u></p> <p>1. ~ 3. (생략)</p> <p>4. <u>청소년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및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u></p> <p>5. <u>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에 관한 행정기관간의 협조·조정</u></p> <p>6. <u>기타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u></p> <p>② (생략)</p> <p>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1인은 주민생활국장이 되며, 나머지 1인은 <u>위촉위원중에서 호선한다.</u></p> <p>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u>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u></p> <p>1. <u>구의회 의원</u></p>	<p>제2조(기능) ① <u>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청소년보호법</u>」 제2조에 따른 -----, <u>청소년유해약물 등</u> -----)</p> <p>5. -----<u>행정기관 간</u> -----</p> <p>6. <u>그 밖의 ----- 회의에 올린 -----</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구성) ①-----<u>명</u>----- -----<u>명</u>-----<u>명</u>-----</p> <p>②-----<u>명</u>----- -----<u>명</u>-----<u>위촉위원</u> <u>중에서</u> -----.</p> <p>③-----</p> <p>----- <u>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u></p> <p>1. <u>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u></p>	<p>제2조(기능) ① (개정안과 같음)</p> <p>1. ~ 5. (개정안과 같음)</p> <p>6. <u>그 밖에 -----</u></p> <p>② (개정안과 같음)</p> <p>제3조(구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삭제></p>

전문위원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2.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교사단체 및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업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p> <p>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u>연임할 수 있다.</u> 다만, <u>구의회 의원인</u> <u>위원의 임기는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u> <u>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u></p> <p>②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u>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u> <u>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u>의 <u>결원으로</u> <u>새로 위촉된</u> <u>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u></p> <p>제7조(간사 등) ①<u>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u> <u>간사 1인과 서기 1인</u>을 둔다.</p> <p>②<u>위원회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팀장으로 한다.</u></p> <p>제9조(출석발언) <u>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u></p> <p>제10조(수당등) ① (생략)</p> <p>②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출석한 <u>구소속공무원이 아닌자</u>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제4조(위원의 임기) ①-----2년----- ----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u>구의회</u> <u>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하고,-----</u> <u>해당 -----</u>, ②-----, <u>금품·향응수수, 성범죄 등 범죄와 연루된 경우와 질병 등의 -----</u> <u>없을 때에는 -----</u> ----- <u>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u>.</p> <p>제7조(간사) 제7조(간사)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된다.</p> <p>②<삭제></p> <p>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10조(수당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2. ----- ----- <u>사람</u></p> <p>3. ----- ----- <u>사람</u></p> <p>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u>당연직</u> <u>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u></p> <p>② (개정안과 같음)</p> <p>제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된다.</p> <p>② (개정안과 같음)</p> <p>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10조(수당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아닌 사람</u>----- -----</p>

관 계 법 령

청소년기본법

[법률 제10298호, 2010. 5.17, 일부개정]

-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 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 ②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 ③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